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우리 대학에 설치한 기술경영전문대학원<Graduate School of MOT(Management of Technology)>(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영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 (과정)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에 외국 대학원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7. 9. 1, 2018. 3. 1, 2018. 10. 17)

제5조 (수업방법) ①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2/3 이상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업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사이버 강의, 원격 강의, K-MOOC, 팀티칭, Action Learning, PBL(Problem Based Learning), 개인 연구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6조 (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석사학위 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외국인의 경우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일반한국어 능력시험 5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2년 이상 정규 교육을 받은 자.

2. 박사학위 과정

- 가. 박사학위 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일반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자이거나 국내 석사학위 취득자.

제8조 (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과정에 입학 지원한 자 중 관련분야에 충분한 연구 및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2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편입학생의 입학 전에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석사학위과정은 21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0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석사과정		박사과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2	9	2	9
3	21	3	15
		4	21
		5	30

[본조신설 2017. 9. 1]

제9조 (입학의 취소)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 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이 되거나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3장 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교과과정, 학점, 수료 및 졸업요건

제10조 (수업연한) ①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은 최소 2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최소 3년으로 한다.

③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최소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의 학위수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각각 6개월 이내
2. 통합과정 : 1년 이내

제11조 (재학연한)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 과정 4년, 박사학위과정 6년, 석·박사 통합과정 7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 (학기) 대학원의 학기는 몰입학기를 고려하여 1년 최대 4학기까지 할 수 있다. 매년 학기의 결정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수업일수)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제14조 (교과과정편성)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교과과정 편성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이수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도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제15조의2 (개설 교과목수와 수강 학생 수) ① 전체 재학생 수에 따라 매 학기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수와 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하게 최대 개설 가능 교과목 수를 초과하여 개설하여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학생수	80 ~ 90	91 ~ 100	101 ~ 110
교과목수	24	25	26
학 점 수	72	75	78

②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생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3. 1.)

③ 제2항에 따라 폐강이 예정된 과목이 운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 전임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1.)

[본조신설 2017. 9. 1]

제16조 (석박사과정의 공동강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사이에 학문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석박사 공동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료학점)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 ② 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45학점으로 하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8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 3. 1)
- ③ 제2항의 수료학점 중 대학원공통필수인 논문작성법을 포함한 공통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8. 29)
- ④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통과목 이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8. 29)

제18조 (이수학점) 학생은 매학기 석사학위과정은 15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추가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제19조 (취득학점 인정)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이 대학원 개설 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성적이 B+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수료) ①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 ② 수료는 재학연한동안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제21조 (성적의 평가) ① 학업 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17)

등급	점수	평점	등급	해설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I	Incomplete(성적보류)
C+	75~79	2.5	W	Withdraw(수강철회)
C0	70~74	2.0	P	Pass(합격)
D+	65~69	1.5	NP	Non Pass(불합격)
D0	60~64	1.0		
F	이하	0.0		

- ② 학업성적 I는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여되며 당해 학기 내 확정 성적을 제출하면 그 성적이 학적부에 기재 된다. 다만, 당해 학기 내까지 성적이 평가되지 않으면 I는 F로 간주한다.

제22조 (학점인정과 수료 성적) 각 과목별 학업성적 등급이 C(평점 2.0) 이상이면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수료에 필요한 이수 학점의 총 평점 평균은 B(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 (졸업요건)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논문을 실적심사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3. 1)

제4장 학위 청구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

제24조 (종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①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3학기부터, 박사과정은 5학기부터, 통합과정은 7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개정 2017. 9. 1)

- ②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 석사과정 3과목,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4과목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 제25조 (학위수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와 공개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위 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별표 2와 같이 해당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7. 9. 1, 2018. 3. 1)
- ② 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논문이 있는 경우)·제1호의1(논문이 없는 경우)·제1호의2(영문) 서식에 의하고, 박사학위는 별지 제2호·제2호의1(영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수여한다.(개정 2019. 2. 26)

제5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자퇴

- 제26조 (등록)** ① 학생은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석사과정에서는 4학기, 박사과정에서는 6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는 10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정규등록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
- ② 수강신청학점 수에 따라 정규등록금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학점등록이라 한다.(신설 2019. 8. 29)
-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연구등록이라 한다.(신설 2019. 8. 29)

제26조의 2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으나 미수료인 상태에서 교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본조 신설 2019. 8. 29]

제26조의 3 (연구등록) 대학원생은 수료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학기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8. 29]

제27조 (휴학) 휴학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제3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3. 1]

제28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 되었을 경우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일 경우 학기 초 4주 이내의 전역예정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제적)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대학원위원회가 확인하고 징계를 의결한 자.

제30조 (자퇴, 퇴학)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연서로 사유서를 첨부한 소정의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장 공개강좌,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 제31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에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위탁생) 정부 각 부처에 재직자로서 그 소속 장관의 위탁이 있는 자는 위탁생으로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 (외국인) 외국인으로서 제7조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7장 장학금

제34조 (장학금) 대학원 학생으로 우리대학의 건학 정신이 투철하고 성적이 우수한자, CEO 추천
입학자,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게 대학원장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직제 및 위원회

제35조 (직제) 대학원의 직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 (지도교수) ① 개별학생의 학사 및 연구와 논문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개정2019.
2. 26)

②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 2. 26)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지도교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 2. 26)

제37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
정 2018. 3. 1)

② 위원회는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 한다.

[제목개정 2018. 3. 1]

제3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위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준용 및 기타 규정

제40조 (준용규칙)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의 학칙 및 일반 대

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41조 (세칙) 본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중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9.)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통교과목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학칙 중 신설된 공통교과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년도 논문작성법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를 이수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26조의 3의 개정학칙 중 신설된 연구등록금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7. 9. 1, 2018. 3. 1, 2018. 10. 17)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제4조 관련)

캠퍼스	계열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아산	인문사회	기술경영학과	26명	기술경영학과	26명	
		스마트팩토리기술경영학과		-----		
합 계		2개 학과		26명	1개 학과	20명

※ 조정된 정원은 2019학년도 전기 신입학자부터 적용

2018학년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	계열	캠퍼스	학과명	전공명	모집과정		입학정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인문사회	아산	기술경영학과	혁신기술경영전공	O	O	36	10
				글로벌기술경영전공				
				프로세스기술경영전공				
			스마트팩토리 기술경영학과	설계운영기술경영전공	O	X		
				소프트웨어기술경영전공				
합 계			2개 학과				46명	

<별표2>(개정 2017. 9. 1, 2018. 3. 1)

학위의 종별(제25조제1항 관련)

계열	학과	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	기술경영학과	혁신기술경영	기술경영학석사	기술경영학박사
		글로벌기술경영		
		프로세스기술경영	기술경영공학석사	기술경영공학박사
	스마트팩토리기술경영학과	설계운영기술경영	기술경영공학석사	-
		소프트웨어기술경영		

(별지 제1호 서식)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있는 경우)(개정2019. 2. 26)

석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석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1호의1 서식)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위기(논문이 없는 경우)(개정2019. 2. 26)

석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석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석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석)○○○

(별지 제1호의2 서식)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영문학위기(개정2019. 2. 26)

H O S E O U N I V E R S I T 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Master of ○○○
in ○○○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Hoseo University,

this ○○ day of ○○, ○○○○

○○○

Dea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2호 서식)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위기(개정2019. 2. 26)

박 제 0000 호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 박사(전공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학 위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 박사(전공분야)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학 위 ○ ○ ○(인)

학위번호 : 호서대 ○○○○(박)○○○

(별지 제2호의1 서식)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영문학위기(개정2019. 2. 26)

H O S E O U N I V E R S I T 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Hoseo University,

this ○○ day of ○○, ○○○○

○○○

Dea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

President of the University